제5장

(일부) 열람차단 / 기사수정 사례

제5장 (일부) 열람차단 / 기사수정 사례

(일부) 열람차단 / 기사수정 **사례 01** **2022서울조정1540·1541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단체(노동조합)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열람차단, 알림보도)

노동조합의 농성장 음주 논란 보도와 관련, 언론사 및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부제소를 조건으로 조정대상보도를 열람차단하고 알림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물류센터 본사 사옥을 점거한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농성장에 돗자리를 깔고 술을 마셨다고 보도했다.

신청이유

신청인 노동조합들은 소속 조합원들이 농성장에서 술을 마신 적이 없음에도 '야만(野蠻)'이라는 자극적인 기사 제목과 함께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회사 건물 내부에서 술판을 벌인 것처럼 보도하고, 이들을 야만적이고 반문명적이라고 하는 등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현저하게 저하시켰다며 조정대상보도(포털사이트 전재 기사 포함)를 삭제하고, 사과를 포함한 정정보도와 함께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집회 및 시위를 위한 정식 절차 없이 진행된 농성행위에 대해 비판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보도는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신청인이 향후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해 피신청인 언론사 및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부제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사를 삭제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기사 삭제와 함께 해당 경위를 알리는 취지로 별도 보도문을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재부는 조정대상보도의 열람·검색 차단과 보도 삭제 경위를 '알림보도' 형식으로 게재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 이외에 6개 매체 보도에 대하여 동일한 사실과 법률관계에 기초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3개 매체 관련 조정은 각 조정성립(정정보도), 2개 매체는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열람차단, 이 가운데 1개 매체에 대해 신청인이 이의를 신청해 법원에 자동으로 소(所)가 제기됨), 1개 매체에 대해서는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음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사항

열람차단

- 조정대상보도가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서 더 이상 열람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알림보도문

보도제목: [알려드립니다]

본문내용: 조정대상보도는 ○○ 본사를 점거한 △△△△노조 ○○물류센터 지회 조합원들이 농성장에 돗자리를 깔고 술을 마신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정을 고려하여 삭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오피니언〉기사수첩〉 섹션 기사목록 상단(5번째 이내)에 알림보도문의 제목을 최초 게재 시점부터 24시간 동안 고정하여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알림보도문의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에는 해당 보도문을 언론사 DB에 저장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일부) 열람차단 / 기사수정 **사례 02** **2022서울조정2094·2095·2096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열람차단)

독지가의 기부 동기가 잘못 기재된 보도자료에 기초해 작성된 보도와 관련, 사회공헌 보도에서는 기부자의 입장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정대상보도를 열람차단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50대 독지가가 한 대학교에 전 재산 300억 원을 기부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기부처를 결정하는 데에는 해당 대학교 출신인 지인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던 중 부동산 임대수익이 장학금으로 쓰이길 원해 기부를 결정하였을 뿐 해당 대학교 출신 지인의 영향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해당 대학교 측이 언론에 임의 배포한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가 기사화돼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함께 상징적인 의미에서 1,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대학교가 제공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보도를 하였음을 강조하며, 기사의 열람·검색을 차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신청인의 입장을 반론으로 보도할 의사는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사회공헌 보도에서 기부자의 입장이 존중될 필요가 있는 점, 다수의 언론 보도가 있은 후 현재 신청인과 기부처 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 합의 해제가 논의 중인 점을 고려해 조정대상보도를 열람차단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 이외에 20개 매체 보도에 대하여 위 사건과 유사한 취지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3개 매체는 각 조정성립(열람차단, 열람차단 및 반론보도), 17개 매체는 각 취하(열람차단, 열람차단 및 반론보도)로 사건이 종결되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모두 구제되었음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사항

열람차단

- 조정대상보도가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서 더 이상 열람·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조정대상보도가 더 이상 열람·검색되지 않도록 요청한다.

(일부) 열람차단 / 기사수정 **사례 03** **2022서울조정1778/1779 각 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열람차단, 동영상 플랫폼 조치)

성추행 의혹 보도와 관련, 피해자인 신청인의 보도 거부 의사를 존중해 조정대상보도와 함께 유튜브 채널, 네이버TV 채널 등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 영상을 모두 열람차단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가게 단골손님들로부터 수개월 동안 성희롱 발언과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성이 가해자들을 모욕죄와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보도하면서, 가게 내부 모습과 신청인의 모습(윤곽)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방송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피신청인 언론사에 성추행에 관한 내용을 제보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지극히 개인적이고 민감한 사건임을 고려해 취재기자에게 방송 보류를 요청했음에도 언론사는 조정대상보도 ①을 방송했고, 이후 취재기자와 재보도 중단에 합의했음에도 조정대상보도 ② 및 ③을 후속으로 보도해 형사사건 피해자인 신청인의 초상 등이 동의 없이 공개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조정대상보도(포털사이트 전재 보도 포함)와 유튜브, 네이버TV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게재된 영상 삭제와 함께 상징적인 의미에서 5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으로부터 성추행 관련 제보를 접수한 후 추가 취재를 거쳐 보도했으나, 형사사건 피해자인 신청인이 보도로 인한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보도들을 열람차단 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조정대상보도들과 함께 유튜브, 네이버TV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 관련 영상들도 모두 열람차단 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 ①, ② 및 ③은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사항

열람차단 (동영상 플랫폼 조치)

- 피신청인은 20XX. X. XX.(월) 정오까지 조정대상보도들을 삭제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위 조치 이후 즉시,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들을 매개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에서도 조정대상기사가 더 이상 열람되지 않도록 각 포털사에 요청한다.
- 피신청인은 20XX. X. XX.(월) 정오까지 유튜브 계정, 네이버TV 계정 등 동영상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는 특정 URL의 조정대상보도들을 삭제토록 요청한다. (피신청인이 직접 운영하는 계정인 경우에는 삭제한다.)

(일부) 열람차단 / 기사수정 **사례 04** **2022서울조정524·477, 2022서울조정517·518(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기사수정)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한 신상정보 노출 등의 2차 피해를 고려해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조정대상보도 영상을 수정하고, 유튜브 채널 및 IPTV로 송출되는 다시보기 영상에도 동일하게 조치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사회의 젠더 갈등을 조명하면서, 대통령 후보자의 특정 부처 폐지 공약에 대한 시민 인터뷰를 보도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취재기자가 자신의 소속이나 방송 프로그램, 취재 목적 등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인터뷰를 진행한 후 동의 없이 신청인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방송에 공개해 신상정보가 노출되었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누리꾼들로부터 인신공격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조정대상보도 중 신청인의 초상 등 신상이 노출 부분의 모자이크 처리 또는 삭제하고 정정보도와 함께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대통령 후보자의 유세 현장에서 당시 쟁점화 된 후보자 공약과 관련한 시민 의견을 듣고자 길거리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신청인이 먼저 본인의 성명, 나이 등을 자발적으로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취재기자는 방송사 로고가 크게 달린 카메라를 사용해 촬영했고, 프로그램 방송 관련 안내 역시 이루어졌으나 신청인이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보도 영상에서 신청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모자이크와 음성변조 처리 등을 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취재 및 보도 경위, 인터넷과 SNS 상에서의 피해 확산 방지 등 제반사정을 검토해 신청인임을 알아 볼 수 없도록 조정대상보도에 모자이크 및 음성변조 처리를 하고 신청인의 실명과 나이가 노출된 부분도 수정하되, 유튜브 채널과 IPTV를 통해 송출되는 다시보기 영상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 △△△△은 '□□□□□부 폐지론'과 온라인상에서의 '페미니즘 백래시(Backlash, 반발)'를 통해 한국 사회 젠더 갈등을 집중 취재했다. **(중략)**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뒤흔든 '□□□□□ 폐지' 공약은 어떻게 봐야 할까? 20대 남성들은 □□□□□□ 폐지 공약에 열광하며 큰 호응을 보였다. 실제로 ◇◇◇ 폐지 공약 1주일 후, 20대 남성의 당시 ◇◇◇ 후보 지지율이 2배 이상 급등했다. △△△△이 만난 20대 남성들은 '□□□□□는 여성 우대 정책으로 오히려 남녀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20대 여성들은 '정치인들이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생각 대신, □□□□□로 엉뚱한 화살을 돌리고 있다'며 □□□□□ 폐지 공약을 비판했다. ◇◇◇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둘러싼 20대 남녀의 입장이 상반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출범 22년 만에 부처 존폐론에 휩싸인 □□□□□의 현주소를 진단한다.

※ 조정대상보도 중 신청인 인터뷰 장면은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사항

기사 수정사항

- 방송사 홈페이지에 조정대상보도 중 신청인의 인터뷰 부분(보도의 31:27~ 31:37에 해당하는 분량)에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모자이크 및 음성변조 처리하며, 신청인의 실명 및 나이가 노출된 부분을 "20대 남성"으로 수정한다.
- 방송 프로그램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영상 및 IPTV를 통해 다시보기로 송출되는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동일한 영상에도 위의 사항을 반영한다.

(일부) 열람차단 / 기사수정 **사례 05** **2022서울조정715/716 각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공공단체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일부 열람차단)

보도의 주된 취지에서 벗어나는 앵커 발언 일부를 열람차단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뉴스 프로그램에서 지자체의 특혜 수의계약 의혹에 관해 보도하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경쟁입찰 대신 임의로 선택해 계약을 체결하는 '수의계약'을 맺었다면 특혜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는 앵커의 발언을 방송했다.

신청이유

신청인 공공단체는 코로나19 진단시약의 가격경쟁력 및 신속한 시약 확보 가능성 등을 평가한 후 특정업체가 타 의료기기·의약품 유통업체보다 유리한 조건인 것으로 판단해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는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임에도 피신청인 언론사는 부정 특혜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보도해 신청인 공공단체의 민간 신뢰와 대외적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보도의 주된 취지는 언론이 산하기관의 특혜의혹을 제기하였음에도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감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는 것으로 앵커의 '수의계약' 발언은 지엽말단적인 것에 해당하며, 신청인 주장은 업체 대표와 신청인 측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이미 보도에 반영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양측의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해 앵커의 일부 멘트를 삭제함이 적절해 보임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광역시 산하 '△△△△△△△'이 영세 의료기기 도매업체로부터 코로나 진단시약을 수의 계약으로, 1년에 24억 원 어치나 납품받아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관련 의혹 제기에도 감사를 차일피일 미뤘는데, 그게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중략)**
A사 대표는 "운이 좋았다"고 했고
[A사 대표 :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러는 거지. 운이 진짜 좋은 거죠"]
○○◇◇◇ 측도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해명했지만,
[○○ △△△△△△△ 관계자 : "행정 절차상 미흡하고 했을 수는 있겠지만 절대 그런 일(특혜)은 없는 것으로…."]
의심스런 정황은 또 있습니다.
작년 5월 한 언론이 A사 특혜의혹을 보도하려 하자, 이□□ ○○시장은 취재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를 할테니 보도를 미뤄달라고 했습니다. **(후략)**
※ 조정대상보도 중 일부 열람이 차단된 앵커 멘트는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사항

일부 열람차단

- 조정대상보도 본문 중 '정부나 지자체가 경쟁 입찰 대신 임의로 선택해 계약을 체결하는, '수의 계약'을 맺었다면 특혜 의심을 피하긴 어렵겠죠.' 부분을 삭제한다.
- 조정대상보도의 다시보기 영상 중 '정부나 지자체가 경쟁 입찰 대신 임의로 선택해 계약을 체결하는, '수의 계약'을 맺었다면 특혜 의심을 피하긴 어렵겠죠.' 멘트 부분을 삭제하여 편집한 영상을 게재한다.
-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네이버, 다음 등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

(일부) 열람차단 / 기사수정 **사례 06**

2022경기조정105/106 각 정정청구
2022경기조정107/108 각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기초자치단체의원)
피신청인 매체유형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일부 열람차단)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신청인을 풍자한 만평(漫評)을 보도내용에서 열람차단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장애인 부모들과 사회복지법인 사이의 문제를 중재하는 자리에서 A 시의원이 중증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B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고, 다른 날 새벽 시간에는 한 여인이 목을 매 자살하는 노랫말이 담긴 음원을 문자로 보내 자살을 종용하는 듯한 협박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서, 언론사는 이 보도를 접한 A 시의원이 다른 장애아동의 어머니 C 씨와 취재기자에게도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후속 보도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B 씨에게 성희롱성 발언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은 없고, 다만 지지자라고 생각해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개선 의지가 담긴 노래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C 씨와 취재기자에게도 협박성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음에도 기자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과 제보자 주장만을 편파 보도해 신청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조정대상보도는 칼럼이며, 신청인이 B 씨 등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등을 참고해 관련 상황을 희화적인 풍자만화로 묘사한 것이고, 공적인물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보도했기에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신청인과 제보자 간 입장 차이가 큰 상황임을 고려해 기사 본문 가운데 단정적 표현 등이 언급된 만평(漫評)을 열람차단 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① A 시의원은 심야에 중증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여성 B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씨에 따르면 A 시의원을 처음 본 것은 금년 4월 초순이며 A 시의원이 장애인 부모들과 K사회복지법인 사이의 문제를 중재하기 위한 건으로 만났단다. **(중략)**

그래서 B 씨는 "사과하러 온 사람이 태도가 그게 뭐냐?"고 하자 A 시의원이 비아냥거리는 투로 "당신 마음에 든다"고 했다는 것이다. B씨는 "그런 발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말"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A 시의원은 "장애인 부모님들이 K사회복지법인을 옹호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 같아 오해를 풀기 위한 자리에서 B 씨가 화를 많이 냈다"고 했다. 그리고는 지난 XX일 새벽 12시 30분께 '○○○○○'라는 음원을 B 씨에게 보냈다. ○○○○○는 '낭군이 사랑방에서 기생첩과 희희낙락하는 모습을 본 아내가 건넌방에 가 목을 매어 자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B씨는 두 아이의 엄마다. 그런데 이미 성년이 된 첫 아이는 1세의 지능밖에 되지 않는 중증장애를 앓고 있다. **(중략)**

이런 아픔을 안고 사는 B씨는 "A 시의원이 보낸 음원을 들어보면 자살해서 빨리 죽으라는 말로밖에 해석이 불가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A 시의원은 "목맨다는 문구에 화가 많이 날 수도 있지만, 불평등한 세상에 대한 개선 의미를 담은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새벽시간에 문자를 보낸 것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알고 편하게 생각해 오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략)**

A 시의원의 이런 행동을 두고 B 씨는 '자살을 종용하는 협박'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 **(후략)**

② **(전략)** 칼럼이 나가자, A 시의원은 또 다른 장애아동의 어머니 C 씨에게 칼럼을 요약한 △△신문 만평을 캡처해서 카톡으로 보냈다. 그리고는 C 씨에게 전화한 뒤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카톡 보셨죠? 참고하시라고... 그냥 저는 놔두려고요"라는 말을 남겼다. A 시의원은 왜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C 씨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까지 해서 참고하라고 했을까? 또 그냥 놔둔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이 대목에서 C 씨는 "A 시의원이 보내온 문자와 전화는 협박의 뉘앙스가 다분하다"는 말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A 시의원은 필자에게도 X월 XX일 밤 10시 21분께 문자를 통해 "잘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말을 남겼다. 그래서 필자는 "뉘앙스만 남기시는 것보다 구체적인 말씀을 해달라"고 답을 했으나 이후 묵묵부답이다. 기자에게도 이런 식의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 힘없는 어머니들에게 한 행동을 어찌 받아들여야 할까.

이후 A 시의원은 사과문을 작성했다. 사과문에는 "언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성희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를 보내기 3일전인 X월 XX일 새벽 1시 20분께 B 씨에게 보냈던 문자에는 "전 그만 좋아하시고 만인을 좋아하시면 더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아침이 되어서야 문자를 확인한 B 씨는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전 그만 좋아하시고?"라며 "제가 의원님을 좋아 하던가요?"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A 시의원은 "좋은 하루되시고요. 비가 오네요.^^"라며 알쏭달쏭한 답글을 남겼다. 이처럼

성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할만한 글을 남기면서 “성희롱의 의사는 없었다”는 그의 말이 과연 진실일까? **(후략)**

※ 조정대상보도 중 일부 열람이 차단된 만평은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사항

일부 열람차단

- 피신청인은 20XX년 X월 XX일(금) 09:00까지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서 조정대상보도 ① 및 ② 의 만평(신청인에 해당하는 그림)의 열람을 차단한다.
- 피신청인은 위 조치 이후 즉시,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네이버, 다음의 포털사이트에서도 위 만평 보도가 더 이상 열람되지 않도록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요청한다.

(일부) 열람차단 / 기사수정 **사례 07** **2022서울조정1755·1756·1757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
처리결과 조정성립(일부 열람차단)

모 상담센터의 유튜브 채널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한 보도와 관련, 방송사 홈페이지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 영상에서 내담자인 신청인의 음성 및 초상 등을 열람차단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욕설 상담기법을 사용하는 B 상담센터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포함된 내담자들의 상담 장면을 공개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내담자들 간 자료공유 목적에서 촬영된 영상을 동의 없이 방송에 내보내고, 상담 진행 방식과 목적 등에 대한 이해 없이 마치 상담자와 내담자들이 욕설만을 주고받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편집·가공된 영상을 공개해 신청인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함께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B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내담자가 센터에서 욕설을 섞어 상담한 적이 많았다는 제보를 하여 관련 내용을 취재하였고,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라는 B 상담센터 관계자의 말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된 동영상(클릭 시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으로 이동됨)을 모자이크, 음성변조 처리 후 방송한 것이기에 신청인의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중재부는 신청인이 내담자로서 보도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보도에 공개된 유튜브 영상 중 신청인 등장 부분을 일부 열람차단하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전재한 보도 영상에서도 이를 반영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 중 신청인의 음성 및 초상이 포함된 부분은 열람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사항

일부 열람차단

-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에서 신청인 음성 및 초상이 포함된 유튜브 영상 자료화면 부분을 삭제한다.
- 시리즈온, 티빙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일부) 열람차단 / 기사수정 **사례 08**

2022서울조정2221·2222/2223·2224
각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피신청인 유감표명, 일부 열람차단)

언론사가 신청인들 동의 없이 취재, 녹화한 영상을 보도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신청인들의 음성 및 초상이 노출된 부분을 열람차단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유망했던 음악가가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게 된 사연을 담은 프로그램을 보도하면서 음악가의 부친이 아들을 만나기 위해 관할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는 장면을 포함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센터 관계자인 신청인들이 부친과 상담하고 방문에 동행하는 모습이 공개되었다.

신청이유

신청인들은 상담 후 부친과 함께 아들의 집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한 상담과 방문 동행 등 전 과정에 대한 취재 및 영상 촬영에 동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신청인들 몰래 해당 장면을 촬영하고 방송에 내보내 평온히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신청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다시보기 영상에서 신청인들이 등장하는 장면의 삭제, 정정보도와 함께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사회로의 환원 방안 등 종합적인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공익적·공공적 목적에서 해당 방송을 보도했고, 보도 영상에서 신청인들이 특정되지 않도록 충분히 흐림 처리를 했으며, 신청인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있는 사실 그대로 보도하였기에 신청인들의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조정대상보도 취재 과정에서 신청인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중재부는 피신청인 언론사가 취재·방송에 대한 허락을 구하지 않고 촬영한 문제를 지적하며, 신청인들에 대한 유감표명 의사를 조정합의서에 기재하는 것과 영상 중 신청인들의 모습과 음성이 노출된 장면을 일부 열람차단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전재한 보도 영상에서도 이를 반영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 중 신청인들의 음성 및 초상이 노출된 부분은 열람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사항

피신청인 유감표명

- 피신청인은 20XX. XX. XX.(금) 신청인들에게 취재·방송에 대해 사전에 허락 및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일부 열람차단

- 피신청인은 20XX. XX. XX.(금) 까지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에서 신청인들 음성 및 초상이 노출된 부분을 삭제하고, 네이버(시리즈온), 웨이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일부) 열람차단 / 기사수정 **사례 09** **2022서울조정2305, 2306 각 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보도, 동영상 플랫폼 조치)

범죄혐의를 보도하면서 신청인 소유 건물 전경을 동의 없이 촬영·공개한 보도와 관련, 방송사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 영상에서 건물 노출 부분을 열람차단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범죄혐의를 알리는 보도에서 피의자들이 위조지폐 제작소로 운영했던 가게라고 지칭하며 신청인 소유의 상가 전경을 보도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피신청인 언론사가 자신 소유의 상가 전경과 내부 구조를 무단 촬영해 방송에 공개했고, 보도 이후 상가 임차인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등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방송사 홈페이지 및 방송사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보도 영상에서 신청인 소유의 건물이 노출된 부분의 삭제와 2,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이 조정대상보도의 주된 취지인바,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신청인 소유의 상가 건물이 노출된 장면은 열람차단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방송사 홈페이지 및 방송사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보도 영상에서 신청인 소유 건물이 노출된 부분을 모두 삭제해 피해구제 효과를 제고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 중 신청인 소유 건물이 노출된 부분은 열람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사항

일부 열람차단

- 방송사 홈페이지의 조정대상보도의 동영상에서 신청인 소유의 건물이 노출된 부분을 삭제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

동영상 플랫폼 조치

- 피신청인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동영상에서 신청인 소유의 건물이 노출된 부분을 삭제한다.